

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05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이 조례의 ‘이의신청’ 해당 조문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를 위반한 규정임.
- 민원처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치법규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음.
- 시민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통한 행정참여 수단으로서의 기능 수행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‘공공시설’ 용어를 ‘공유재산인 공공시설’로 변경함.
(안 제2조제2호)
- 처분한 결과에 대한 ‘이의제기’에 관한 규정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르도록 함. (안 제13조제1항)
- 이의신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강행 규정으로 변경함.
(안 제13조제2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4
- 사전예고 결과(의견 없음) : 붙임5
 - 입법예고 : 2021. 3. 9. ~ 2021. 3. 29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6
 - 방침결정문 : 붙임7

〈붙임 1〉

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본문 중 “공공시설” 을 “공유재산인 공공시설”로, “(동상·탑·기념비” 를 “(동상·상징탑·기념비·상징물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“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” 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요구할 수 있다” 를 “요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건축디자인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축디자인과장 조 계 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디자인팀장 강 영 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강 영 철 (행정 2620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 대비표